

# 입법청원서

## I

### 주요내용

#### □ 제1조(목적)

- 목적규정에 대한민국 정통성과 정체성 확립 추가

#### □ 제2조(정의)

- 사건 개념 재정립 : 제주4·3사건은 대한민국 건국을 방해하기 위한 남로당 공산주의자들의 폭동이자 내란임을 분명히 함
- 희생자 개념 재정립 : 수형인은 제외시키고, 내란에 가담하지 않은 사람으로 명시
- 유족의 범위를 배우자와 자녀로 한정함
- 4·3사건의 가해자를 남로당원 및 그 추종자로 하여 추가함

#### □ 제14조(특별재심)

실체법상 무죄인 수형인	일반 형사소송절차에 의한 재심-> 형사보상-> 국가배상 모두 가능 따라서 특별재심이 불필요		
실체법상 무죄가 아닌 수형인 (공소제기절차가 무효인 경우)	원칙	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않음	
	예외	특별재심을 인정하는 경우	공소기각판결 형사보상청구 불가 기각(공소제기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부합한 경우)

- 실체법상 무죄가 아닌 수형인은 절차법상 재심재판을 받을 수 없음이 원칙
- 특별법에 의한 재심을 인정하여 공소기각판결을 받았어도 형사보상 청구 불가하여 재심청구가 형사보상금 목적이거나 재심청구 실익이 없음
- 전과말소는 3년을 초과하는 징역형은 10년, 3년 이하의 징역형은 5년이 경과되면 형은 자동실효되므로 전과말소 목적의 재심청구도 실익이 없음
- 4·3수형인에게만 특별재심을 허용하는 것은 특권에 해당하여 부당함

#### □ 제16조(희생자에 대한 위자료)

- 위자료는 불법행위를 전제로 하므로 보상금 용어가 적절하고 보상금 지급요건과 허위 신청자 처벌규정 등 신설

#### □ 제16조의1(보상금 등의 환수) 신설

## 제주4·3사건 특별법 개정안의 문제점 및 개선안

개정안	문제점	개선안
<p><b>제1조(목적)</b> 이 법은 제주4·3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이 사건과 관련된 희생자와 그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시켜줌으로써 인권신장과 민주발전 및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법목적이 선 진상규명, 후 명예회복임에도 진상 규명부터 제대로 되어있지 않음</li> <li>■ 4·3은 이념의 대립에서 발생한 사건이므로 대한민국 정체성 강화가 필요</li> <li>■ 대한민국 정통성과 정체성에 부합하는 진상규명과 목적 규정으로 개정 필요</li> </ul>	<p><b>제1조(목적)</b> 이 법은 제주4·3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이 사건과 관련된 희생자와 그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시켜줌으로써 대한민국의 정통성 및 정체성 확립과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
<p><b>제2조(정의)</b>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“제주4·3사건”이란 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1948년 4월 3일 발생한 소요사태 및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그 진압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을 말한다.</li> <li>2. “희생자”란 제주4·3사건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, 후유장애가 남은 사람 또는 수형인(受刑人)으로서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라 제주4·3사건의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.</li> <li>3. “유족”이란 희생자의 배우자(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와 직계존비속을 말한다. 다만,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희생</li> </ol>	<p>제2조 정의규정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훼손하여 헌법의 핵심규정인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위반하고 주권자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함</p> <p>1호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3·1시위사건과 4·3사건은 별개의 사건인데 양자를 결부시키는 것은 4·3을 경찰의 탄압에 대한 항쟁으로 미화하기 위한 의도임</li> <li>■ 정의에 4·3사건의 주동자인 남로당이 빠짐</li> <li>■ 4·3사건은 남로당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수립하기 위한 계획된 공산폭동, 내란사건이었음. 대한민국에 선전포고까지 했던 내란을 소요사태 또는 무력충돌로 정의함은 현재결정에 반하고 대한민국 정통성을 부정하는 역사왜곡임</li> </ul>	<p><b>제2조(정의)</b>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“제주4·3사건”이란 5·10총선거를 방해하기 위해 1948년 4월 3일 발생한 남로당의 공산폭동 및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내란과 그 진압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을 말한다.</li> <li>2. “희생자”란 제주4·3사건으로 인하여 <b>무고하게</b>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, 후유장애가 남아 있고, <b>내란에 가담하지 않은 자</b>로서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라 제주4·3사건의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.</li> <li>3. “유족”이란 희생자의 배우자와 자녀를 말한</li> </ol>

<p>자의 형제자매를 말하고, 형제자매가 없는 경우에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으로서 희생자의 제사를 치르거나 무덤을 관리하는 사람 중에서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라 유족으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.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무력충돌은 반란의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중립적 개념에 해당하므로 남로당의 내란과 군경의 진압사건으로 규정함이 정확함</li> <li>■ 신생국가의 존립, 남로당의 게릴라전과 잔혹한 학살극에 대처하기 위해 강경진압은 불가피하였고 정당하였음</li> </ul> <p>2호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수형인은 희생자에서 제외한다는 기준이 없이 위원회에 백지위임한 것은 헌재결정과 포괄적위임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위헌임</li> <li>■ 정치적 의미에서의 희생자(범법행위하였으나 공소제기절차가 위법한 경우 등)는 본 법에서 말하는 희생자가 아님</li> <li>■ 공산폭동 및 반란에 가담한 수형인을 희생자에 포함시킨 것은 대한민국 건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것이며 국민 간 분열과 갈등을 증폭시킬 수 있음</li> </ul> <p>3호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사실상의 배우자는 제외함은 70년 전 사건의 경우 사실상 배우자는 법률관계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임</li> <li>■ 유족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 6.25전쟁 전후 국난 중 유족에 대한 처우와 비교시 형평이 맞지 않음</li> <li>■ 가해자 정의 불비</li> </ul>	<p>다.</p> <p>4. “가해자”란 제주4·3사건을 일으켜 살상, 방화, 약탈 등을 자행한 남로당소속원 및 그 추종자들을 말한다.</p>
---	---	---

<p><b>제4조(국가의 책무)</b> 국가는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고, 진상규명에 적극 협조한 가해자에 대하여 적절한 화해조치를 취하여야 하며, 국민화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화해조치의 전제조건은 가해자의 협조이외에 가해자의 참회와 피해자의 용서가 진실로 확인되어야 하며 비문 등 역사적 기록으로 남길 필요 있음</li> <li>- 화해조치는 막연한 개념이므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기본법제38조에 준해 복권, 사면, 불법행위 책임 감면 등에 한하고 가해자에 대하여는 위자료 등 금전적 조치가 될 수 없음</li> <li>- 화해조치에 위자료 지급을 포함시키는 경우 재산권침해, 국가 정체성 침해 등으로 위헌임</li> </ul>	<p><b>4조(국가의 책무)</b> 국가는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고, 진상규명에 적극 협조한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사죄하고 피해자의 용서가 있는 경우 복권, 특별사면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, 국민화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</p>
<p><b>제5조(제주4·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)</b></p> <p>8. 집단학살지, 암매장지 조사 및 유골의 발굴·수습 등에 관한 사항</p> <p>10. 제15조에 따른 직권재심 권고에 관한 사항</p>	<p>8호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집단학살지의 주체가 불명확하므로 구분 필요함</li> <li>■ 집단학살의 주체를 국군과 경찰로 해석하는 경우 정당한 진압행위는 국가폭력으로 매도하고 공산폭동과 반란은 항쟁과 봉기로 둔갑시켜 역사를 왜곡할 우려가 있음</li> <li>■ 10호의 직권재심은 현행법 체계상 불가 또는 실익이 없음</li> </ul>	<p>8. 남로당에 의한 집단학살지, 진압군에 의한 집단사망지, 암매장지 조사 및 유골의 발굴·수습 등에 관한 사항</p> <p>10. 삭제</p>
<p><b>제6조(제주4·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)</b></p> <p>④ 위원장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되고 위원은 관계 공무원과 유족 대표를 포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.</p>	<p>④항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하면 편향적 구성이 될 소지가 다분하므로 여야의 추천 및 정치적 견해를 달리하는 시민단체가 동수로 추천받아야 부패를 방지함</li> </ul>	<p>④ 위원장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되고 위원은 관계 공무원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시민단체 중에서 국회 교섭단체의 추천을 받아 위원장이 위촉한다</p>
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유족대표는 제척사유에 해당하여 위원에서 제외되어야 함</li> </ul>	
<p><b>제11조(진상조사 결과 보고)</b></p> <p>② 위원회는 제1항의 보고서를 공개하여야 한다. 다만, 국가의 안전보장, 국민화합과 민주발전을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위원회에서 결정한 경우에는 보고서의 일부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.</p>	<p>②항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단서에서 국민화합과 민주발전이라는 다의적인 개념을 공개제한 기준으로 삼으면 국민의 알권리 침해, 남로당 만행 은폐, 역사적 진실 왜곡 가능성</li> </ul>	<p>② 위원회는 제1항의 보고서를 공개하여야 한다. 다만,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국민의 생명·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내용으로서 불가피하다고 위원회에서 결정한 경우에는 보고서의 일부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.</p>
<p>제12조(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) 제주4·3사건 피해로 인하여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경우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거나 기록을 정정할 수 있다.</p>	<p>-위원회의 결정이 법령을 개폐할 여지가 있게 한 것은 위원회에 입법권까지 부여하여 부당하고 가족관계등록부 작성과 정정은 관계법령에 따라야 적법하게 처리할 수 있으므로 불필요한 규정임</p>	<p>삭제</p>
<p><b>제13조(희생자 및 유족의 권익 보호)</b> 누구든지 공공연하게 희생자나 유족을 비방할 목적으로 제주4·3사건의 진상조사 결과 및 제주4·3사건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희생자, 유족 또는 유족회 등 제주4·3사건 관련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.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진상조사결과보고서 등에 대한 비판은 학문과 사상의 자유, 표현의 자유 등에 의해 보호되어야 하므로 본조는 헌법상 기본권을 제한하는 위헌적 독소조항임</li> <li>■ 제주4·3사건은 그 평가가 좌편향되어 있어서 제주4·3사건의 진상조사결과인 남로당제주도당 무장대의 무장봉기를 반박하여 이야기하면 허위의 사실 유포라고 정한 것은 역사왜곡을 법이 보호하는 격</li> </ul>	<p><b>제13조(희생자 및 유족의 권익 보호)</b> 누구든지 공공연하게 대한민국 건국을 방해한 제주4·3사건을 국가폭력에 저항한 항쟁 등으로 역사를 왜곡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대한민국 정체성을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.</p>

	<p>이고 대한민국 정통성과 정체성을 부정하는 것임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제주4·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심의·의결 내용을 절대화 시키는 결과가 되어 이 조항은 초헌법적임</li> <li>■ 희생자와 유족이라 하는 자의 상당수가 남로당 가해자인 점을 고려하여 이들의 명예를 보호하려는 의도가 있어 보이는 바,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과거의 불찰을 인정하고 사죄와 반성을 통해 국민의 일원으로堂堂하게 지내는 자세가 바람직함</li> <li>■ 가해자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이 오히려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부작용으로 나타날 우려가 농후하다는 점에서 상반된 가치의 보호를 모두 고려하는 내용이 필요</li> <li>■ 지금까지 제주4·3사건의 진상조사는 좌편향 시각에서 이루어져 이를 진상조사결과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고, 합리적 이유없이 4·3관련 단체를 특별히 보호함은 평등원칙 위반임</li> </ul>	
<p><b>제14조(특별재심)</b> ① 제주4·3사건 희생자로서 제주 4·3사건으로 인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자, 수형인 명부 등 관련 자료로서 위와 같은 자료 인정되는 자는 「형사소송법」 제420조, 제424조 및 「군사법원법」 제469조, 제473조에도 불구하고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.</p> <p>② 1948년 12월 29일에 작성된 「제주도계엄지구 고등군법회의 명령 제20호」와 1949년 7월 3일부터</p>	<p>①항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72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대한민국에 항적했던 제주4·3수형인에게 특별재심까지 인정해 주는 특권을 부여한다면 오히려 국민화합에 저해되고 평등의 원칙에도 위반함</li> <li>■ 진정한 희생자는 「진실·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기본법」 제2조제2항과 형평에 맞추어 현행 형사소송법에 의한 재심절차로 충분히 구제 가능하여 특별</li> </ul>	<p>삭제</p>

<p>7월 9일 사이에 작성된 「고등군법회의 명령 제1-18호」 및 각각의 명령서에 첨부된 「별지」 상에 기재된 자는 유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자로 본다.</p> <p>③ 「형사소송법」 제423조 및 「군사법원법」 제472조에도 불구하고 재심의 청구는 제주지방법원이 관할한다.</p> <p>④ 제1항의 재심에 관한 절차는 그 재심의 성격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「형사소송법」과 「군사법원법」의 해당 조항을 적용한다.</p>	<p>재심이 불요함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실제로 범죄성립 인정되는 정치적 의미에서의 희생자는 공소기각판결을 받을 수 있는 사유만으로는 현행법상 재심재판의 대상이 될 수 없음</li> <li>■ 정치적 의미의 희생자에게 재심재판을 허용하더라도 공소기각판결을 선고받은 것 가지고는 형사보상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어 재심을 허용할 실익이 없음</li> <li>■ 반란행위에 적극 가담했던 수형인들은 오히려 배상책임을 져야할 가해자들이며 이들에게 특별재심까지 인정하면서 배보상을 하려는 의도는 국민 법감정상 도저히 용납할 수 없음</li> <li>■ 기존 생존4·3수형인 등이 재심재판을 통해 형사보상금을 수령한 사안이 위법하였음을 다투는 수사와 소송이 진행중에 있음</li> <li>■ 수형인에 대한 명예회복조치를 취한다면 대한민국 건국의 역사는 크게 왜곡 되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은 철저히 부정되며 국민 간 분열과 갈등을 증폭시킬 것임</li> <li>■ 재심청구권자가 형소법상 형제자매인데 특별법은 유족(사실상배우자, 4촌이내 방계혈족)으로 확대하여 평등권 침해</li> </ul> <p>③항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제주지방법원에 관할을 두는 경우 지역적 특성상 공정한 재판을 받기가 어려움</li> </ul>	
--	--	--

<p><b>제15조(수형인에 대한 명예회복조치)</b></p> <p>① 위원회는 제14조제2항의 1948년 12월 29일에 작성된 「제주도계엄지구 고등군법회의 명령 제20호」와 1949년 7월 3일부터 7월 9일 사이에 작성된 「고등군법회의 명령 제1-18호」 및 각각의 명령서에 첨부된 「별지」 상에 기재된 사람에 대한 유죄판결의 직권재심 청구를 법무부장관에 권고할 수 있다.</p> <p>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권고의 취지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.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상동</li> <li>■ 입법부가 행정부에 직접 권고함은 권력분립원칙 위반</li> </ul>	<p>삭제</p>
<p><b>제16조(희생자에 대한 위자료 등)</b> 국가는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 위자료 등의 특별한 지원을 강구하며, 필요한 기준을 마련한다.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제주4·3폭동·반란 주동자들까지 4·3희생자로 규정하여 가해자와 피해자 구분없이 이들에 대한 국가의 보상을 명시하여 지급하는 것은 <b>국민의 재산권과 국가 정체성 침해</b>로 반발이 예상됨</li> <li>■ 위자료는 불법행위를 전제로 하는 개념이므로 적절치 않고 보상이 적합함</li> <li>■ 보상은 거짓 희생자를 철저히 가려내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하고 구 특별법상 희생자 개념과 달리 철저히 무고한 희생자여야 함</li> <li>■ 보상금 지급요건과 허위 신청자 처벌 규정 등 신설</li> </ul>	<p><b>제16조(희생자에 대한 보상 등)</b>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희생자 여부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없어야 할 것</li> <li>2. 희생자는 폭동과 내란에 가담한 사실이 전혀 없어야 할 것</li> <li>3. 4·3수형인은 무죄의 확정판결이 있기 전에는 희생자로 결정하여서는 아니될 것</li> </ol> <p>② 희생자의 기준, 보상금의 액수,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</p> <p>③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 등을 받거나 받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</p>



<p><b>제16조의1(보상금 등의 환수)</b></p>	<p>■ 거짓 희생자에게 지급된 금전의 환수규정인 불가분 조항 신설</p>	<p><b>제16조의1(보상금 등의 환수)</b> 국가는 이 법에 따라 보상금 등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가 받은 보상금 등을 전부 환수하여야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 등을 받은 경우</li> <li>2. 보상 등을 받은 후 그 보상 등을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</li> <li>3. 잘못 지급된 경우</li> </ol>
<p><b>제24조(기념사업 등)</b>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자의 영령을 위로하고 역사적 의미를 되새겨 평화와 인권을 위한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 이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의 지원에 관하여 희생자 및 유족과 제주도민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추념 행사의 거행</li> <li>2. 위령공원·위령묘역 조성 및 위령탑·사료관 건립</li> <li>3. 제주4·3사건 관련 유적의 보존·관리</li> <li>4. 제주4·3사건과 관련한 연구 및 교육</li> <li>5. 그 밖의 제주4·3사건 관련 기념사업</li> </ol>	<p>■ 건국을 방해한 범죄행위자는 사회의 주체이지만 추념의 대상은 될 수 없음. 4·3사건의 핵심은 대한민국 건국이 좌익의 방해로 극복하고 힘들게 이루어낸 역사였음을 상기하고 후대에 알리는 일임. 또한 적화의 위기를 극복한 애국선열의 공로를 기리고 이 분들의 희생으로 자유와 평화를 누리고 있음을 기념하는 일에 역점을 두어야 함. 다만 자유수호 과정에서 억울하게 희생된 사람은 국가차원에서 추념할 수 있음</p> <p>■ 4·3사건은 제주도민과 관련이 되면서 국가 전체의 명운과 관련되었던 사건이므로 국민의 의견은 당연히 존중함이 마땅하기에 희생자 및 유족과 제주도민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큰 의미가 없음</p>	<p><b>제24조(기념사업 등)</b>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한민국 건국을 위해서 피흘리신 애국선열과 제주4·3 희생자의 영령을 위로하고 건국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겨 건국정신을 위한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건국기념 및 추념 행사의 거행</li> <li>2. 위령공원·위령묘역 조성 및 위령탑·사료관 건립</li> <li>3. 제주4·3사건 관련 유적의 보존·관리</li> <li>4. 제주4·3사건과 관련한 연구 및 교육</li> <li>5. 그 밖의 제주4·3사건 관련 기념사업</li> </ol>

<p><b>제29조(희생자 지원단체 조직의 제한)</b> 누구든지 희생자 또는 그 유족을 지원한다는 명목 아래 영리를 목적으로 단체를 조직하거나 단체적인 활동 또는 개인적인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.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</li> <li>■ “희생자 또는 유족을 지원한다는 명목 아래”와 “영리를 목적으로”는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 위반</li> </ul>	<p><b>삭제</b></p>
<p><b>제31조(벌칙) ②</b> 제29조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단체를 조직하거나 단체적인 활동 또는 개인적인 활동을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과도한 제한은 비례의 원칙 위반</li> </ul>	